

의안번호	2220344
의 퇴 인	조계원의원
회 답 일	2026. 9. 3.
추계번호	26C3533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(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) 및 제24조(위원회의 구성 등)	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·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를 둠(안 제22조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안 제24조제1항)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, 공정거래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함(안 제24조제2항)	의무규정
2	안 제31조(사무처의 설치)	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(제1항)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(제2항)	의무규정
3	안 제35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	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둠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(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) 및 제24조(위원회의 구성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1조(사무처의 설치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3	안 제35조(분쟁조정위원회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소속 및 위원 구성 변경(안 제22조 및 제24조)

- 개정안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·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지위를 격상하는 한편, 모든 위원을 위촉직으로 구성¹⁾하도록 하고 있음
-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나, 이는 기존 위원회 역할이나 업무범위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모든 위원을 위촉직으로 구성할 경우 추가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위원회 구성이 모두 위촉직 위원(위원장 포함 12명)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, 2025년 기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38회이며,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5,580만원임

나. 위원회 사무처 설치(안 제31조)

- 개정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,

1) 현행(법 제21조제2항):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, 공정거래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며, 위원회 소관 업무 지원, 분쟁조정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사무처 설치·운영에 따른 인건비·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다만, 이는 직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개정안에 따른 사무처 역할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소속 조사 인력 5인이 수행하고 있고,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사건 증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등을 고려할 때,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

【표 1】 예술인권리보호과 소속 조사 인력 5인 수행 업무

구분	업무분장	비고
A	·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－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(사건 심의·의결 지원) － 신고사건 분쟁조정 ·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사건 조사 － 불공정행위, 예술의 자유침해 사건 · 예술인 권리보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· 예술인 신문고 운영	
B	·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사건 조사 －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사건 조사 · 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방지, 심리상담 등 ·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관련 업무 · 권리보호 교육 및 예술인조합 관련 업무	
C	·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－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(사건 심의·의결 지원) － 신고사건 분쟁조정 ·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사건 조사 － 불공정행위, 예술의 자유침해 사건 · 예술인 권리보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· 예술인 신문고 운영 ·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관련 업무(서면계약 활성화 등)	
D	·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사건 조사 －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사건 조사 · 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방지, 심리상담 등	

구분	업무분장	비고
E	·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-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(사건 심의·의결 지원) - 신고사건 분쟁조정 ·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사건 조사 - 불공정행위, 예술의 자유침해 사건 · 권리보호 교육 및 예술인조합 관련 업무	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다.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35조 및 제36조)

-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별도의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회의 개최 등에 따라 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안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와 안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간 업무 배분을 예상하여 신규 위원회 설치에 따라 향후 증가하는 회의 횟수 등과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 - 법 제37조는²⁾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이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이미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
 -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, 법 시행('22.9.25.) 이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 및 처리한 사건은 총 550건이고('26.7.31. 기준), 이 중 분쟁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44건임

2) 제37조(분쟁조정) ①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.
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.
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「민법」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.
 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